■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4]

사건기록 보존기간 특칙(제219조 관련)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준영구	1.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죄의 사건기록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사건기록 3.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죄의 사건기록 4.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의 사건기록 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
30년	1. 변사 사건기록 2. 실종 사건기록 3. 화재 사건기록 4. 안전사고 사건기록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2조의 죄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
5년	1.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송치한 소년보호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 중 해양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문서
3년	1. 입건 전 조사 사건 중 공람종결 결정한 사건기록 2. 죄명이 특정되지 않는 사건기록